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8일 김문호, 김동희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1. 7. 11)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 □ 제안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강화함. (안 제17조 [별표 2] )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본 조례가 왜 개정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 현재 주차 설치기준 완화에 따라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

질 문	답 변
<p>○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고 신규 건축 신청이 10건 정도 추가 접수되어 있는데, 향후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접수된 건축 신청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p> <p>○ 일부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추가 의견은?</p>	<p>○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내지는 사업승인이 신청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마련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함.</p> <p>○ 다중주택도 19호를 지을 경우 주차장을 1, 2면만 설치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시 다중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p>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본 조례안 개정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함.

- 경과조치 마련으로 민원발생을 예방
- 다중주택도 주차설치 기준 강화(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 기준 적용)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의결 년월일	2011. 7. 11

발의연월일 : 2011. 7. 11.

발 의 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 개정시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신청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 다중주택의 주차설치 기준을 강화된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로 수정함. (제17조 별표2의 4)
- 다중주택도 건축허가시 주차설치 기준을 강화된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함. (제17조 별표2의 5)
- 부칙의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함.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별표2의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17조 별표2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를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0.3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심의·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신설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1. 위탁시설	현행과 같음	1. 위탁시설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 <del>다가구주택 및</del> <b>다중주택</b> 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li> <li>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li> </ul>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li> <li><b>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 60㎡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b></li> </ul>	5. <del>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del> <b>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li> <li><b>다중주택 및</b>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 60㎡ 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b>호실</b>)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b>호실</b>)당 0.3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li> </ul>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현행과 같음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현행과 같음
7. 그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7. 그밖의 건축물	현행과 같음	7. 그밖의 건축물	현행과 같음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심의·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 지 ”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li> <li>•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 60㎡ 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0.3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li> </ul>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7. 그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